Crowe

한울회계법인

월간 뉴스레터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20년 3월호

Contents

회계정보

- 2019 년 증권신고서 분석 및 투자자 유의사항
- 2019 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 예고

세무 및 법률정보

- 코로나 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세법개정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Tax Tips: 코로나 19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관리회계/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 위 규모이며, Global Top8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Global 의 한국 Member Firm 입니다.]

한울회계법인의 뉴스레터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연락처

전화번호 :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kr
Website : www.crowe.kr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 5~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2019년 증권신고서 분석 및 투자자 유의사항

현황

2019년 증권신고서 분석 및 투자자 유의사항

[출처: 금융감독원, 2020. 3. 18]

I. 현황

1) 신고서 접수

□ **(접수 건수)** '19년 증권신고서 접수 : **총 496건**('18년 총 504건, △1.6%)입니다.

◦ 최근 3년간 주식 발행 신고서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채권 발행 신고서는 금리 인하 영향으로 증가

※ 주식 증권신고서 : '17년(205건) → '18년(199건) → '19년(170건)
채권 증권신고서 : '17년(250건) → '18년(272건) → '19년(294건)

□ **(모집·매출액)** '19년 자금조달 규모 : **69.7조원**('18년 83.9조원, △16.9%)입니다.

◦**(주식)** 지난 2년*과 달리 '19년에는 **대규모 IPO** 및 **유상증자**가 **없어** 모집·매출 규모가 **전년 대비 33.0% 감소**(3.4조원↓)

* '17년(넷마블, IPO 2.6조원), '18년(삼성중공업, 유상증자 1.4조원)

◦**(채권)** 저금리 시장상황 **지속**으로 **발행금액**이 **증가***

* '17년(38.9조원) → '18년(47.4조원) → '19년(58.6조원)

◦**(합병 등)**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 합병(이하 '합병 등')과 같은 **대규모 조직변경***이 없어 전년 대비 **84.0% 감소**(22조원↓)

* '18년 : 우리은행(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11.0조원), CJ E&M(합병, 3.6조) 등

2) 신고서 심사

□ **(정정요구)** '19년 정정요구 비율(6.4%)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 (증권별) 회사채·IPO 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는 없는 반면, 합병 등(19건) 및 유상증자(10건) 신고서는 정정요구가 빈번

신고서 접수 및 정정요구 현황

(단위 : 조원, 건,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주식	채권	합병등		주식	채권	합병등		주식	채권	합병등
모집·매출금액	**74.4**	21.3	38.9	14.2	**83.9**	10.3	47.4	26.2	**69.7**	6.9	58.6	4.2
신고서 접수건수(A)	**502**	205	250	47	**504**	199	272	33	**496**	170	294	32*
정정요구대상(B)	**25**	8	-	17	**25**	12	1	12	**32****	10	3	19
정정요구횟수(C)	**28**	9	-	19	**26**	13	1	12	**38**	15	4	19
정정요구 비율(B/A)	**5.0**	3.9	-	36.2	**5.0**	6.0	0.4	36.4	**6.4**	5.9	1.0	59.4

* 합병 24 건, 분할 2 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6 건

** '18 년 접수된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2 건 포함

◦ **(시장별)** 코스닥 상장사가 제출한 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가 대부분(93.8%, 30/32건)

시장별 정정요구 현황('19 년)

(단위 : 건, %)

구 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비상장	합 계
신고서 접수(A)	201	73	6	216	496
정정요구 건수(B)	1	30	-	1	32
유상증자	-	10	-	-	10
BW 등	1	2	-	-	3
합병 등	-	18	-	1	19
정정요구 비율(B/A)	0.5%	**41.1%**	-	0.5%	6.4%

◦ **(인수방식별)** 주관사의 인수 책임이 없는 모집주선 방식 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가 다수

인수방식별 정정요구 현황('19 년)

(단위 : 건, %)

구 분	총액인수	잔액인수	모집주선	직접공모	합 계*
신고서 접수(A)	385	45	17	17	464
정정요구 건수(B)	-	3	9	1	13
정정요구 비율(B/A)	-	6.7%	**52.9%**	5.9%	2.8%

* 합병 등 신고서 제외

정정요구의 특징

II. 2019년 정정요구의 특징

1) 반복된 정정요구 증가

□ 1차 정정요구한 사유가 정정신고서에 명확히 반영되지 않아 동일 신고서에 대해 **2회 이상 추가 정정요구**한 사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및 주식연계채권 신고서의 경우 2회 이상 반복적인 정정요구 등으로 효력발생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증가

2) 다양한 정정요구 사유

□ **(주식·채권)** 법령위반 혐의 미기재, 최대주주 변경, 불명확한 자금조달 목적 및 집행내역 등 다양한 사유로 정정요구가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재무위험은 물론, 발행회사의 제재·조치 및 지배구조 위험, 자금사용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데 기인

정정요구 사유(주식·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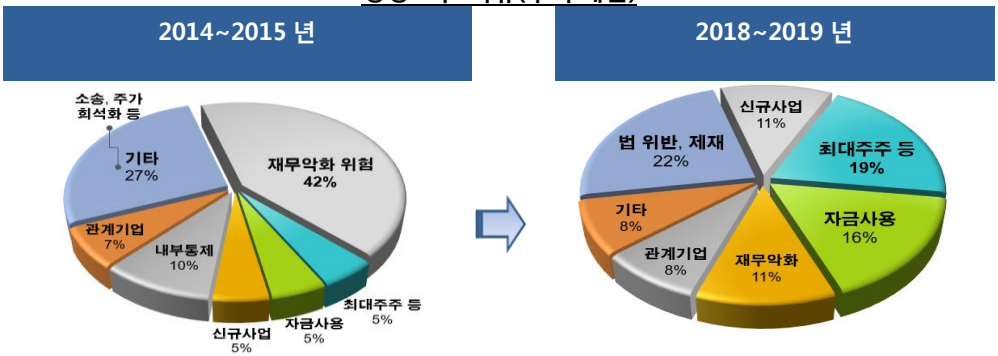

□ (합병 등) 합병가액 및 산출근거 부실기재가 주요 정정사유입니다.

◦ 특히, 수익추정 관련 구체적 근거 및 수치 미제시, 합병가액 할인율 산정 근거에 대한 불충분한 기재내용 등

3) 취약기업에 대한 정정요구 집중

□ 정정요구를 받은 총 13개* 기업은 공통적으로 재무구조 및 경영 안정성이 취약합니다.

* 합병 등 신고서 제출 19사 제외

◦ (높은 부채비율) 13사의 평균 부채비율(516%)이 전체 상장기업(2,025사)의 평균(65%)* 보다 약 8배 높은 수준

*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18 사업연도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

◦ (빈번한 경영진 교체) 13사 중 신고서 제출 전후 6개월간 대표이사 변경기업 10사(77%), 최대주주 변경기업 8사(61%)

◦ (잦은 자금조달) 13사 중 3사는 유동성 부족 및 영업부진 등으로 최근 2년 이내에 10회 이상 증권 발행(공·사모 포함)

주요 정정요구사례 및 투자자유의사항

Ⅲ. 주요 정정요구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

※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시 금융당국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증권의 가치를 보증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

최대주주 변경 등 경영안정성 위험

◦ (위험요인) 최근 1년간 최대주주가 빈번하게 변경되었으며 현재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아 향후에도 최대주주 변경 가능

◦ (정정요구) 최대주주 변경과정, 변경사유 및 향후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 거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요구

➡ 투자자는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최근 변동현황, 향후 변경 가능성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법 위반 등 제재 및 조치 가능성

◦ (위험요인) 주권상장법인이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상법* 위반 가능성이 있음

* 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등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상법§542조의9①)

◦ (정정요구) 상법 위반 관련 상세내역, 위반혐의에 대한 회사의 의견 및 법규 위반 시 회사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요구
➡ 투자자는 위반혐의에 대한 회사의 소명, 처벌 가능성, 회사의 내부통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공모자금의 사용목적
◦ (위험요인) 공모자금 전액을 타법인 인수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나, 구체적 투자대상 및 목적이 불명확

◦ (정정요구) 투자대상, 투자계획의 주요 내용(인수방법, 계약조건, 거래금액 산정내역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투자계획이 무산되거나 지연될 경우 공모자금 운용방안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
➡ 투자자는 발행회사의 공모자금 사용목적, 자금 사용처의 우선순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향후 계획

Ⅳ.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취약기업의 투자위험 기재 충실성, 합병가액 산출근거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공시정보에 대한 점검 및 분석을 통하여 투자자가 유의할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음

2019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 예고

2019 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 예고

[출처: 금융감독원, 2020. 2. 25]

▶기업 스스로 점검항목을 사전 확인하여 사업보고서 작성 충실화 유도

배경

Ⅰ 배 경

□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 등이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미흡을 최소화하기 위해
◦ 12월 결산법인의 2019년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20. 3.30.)에 앞서 사전 예고하며
⇨ 이를 통해 기업은 사업보고서 부실기재를 예방할 수 있고, 투자자는 더욱 충실한 정보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기재됩니다.
※ (점검효과) 그간의 점검을 통해 사업보고서의 기재미흡률이 하락하는 등 사업보고서의 신뢰도 및 충실도가 지속적으로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개요

□ 사업보고서는 기업의 연간 사업·재무현황을 총괄 정리한 자료로 투자자가 기업을 파악하고 투자판단을 하는데 기초가 되는 공시서류입니다.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가 형식상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매년 중점점검을 실시하여 공시충실화 유도

대상

Ⅱ. 대 상

□ 12월 결산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총 2,789사에 대하여 사전예고한 중점 점검사항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사업보고서 점검대상(잠정치)

(단위: 사, '19.12 말 기준, 잠정)

주권상장법인				비상장*	합 계**
유가	코스닥	코넥스	계		
776	1,373	147	2,296	493	2,789

*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 증권 소유자수 500인 이상 외감법인 등

** 재무사항 점검은 총 2,699개사를 대상으로 함(금융회사 및 외국기업 등은 제외)

주요 점검항목

Ⅲ. 주요 점검항목

1. 재무사항(14개 항목)

외부감사제도 관련 공시내역의 적정성(9개 항목)

◦ (선정사유)회계신뢰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내부회계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고, 감사품질 강화 등을 위한 新제도 충실 이행 유도

◦(점검내용)❶외부감사제도 및 ❷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 공시, ❸핵심감사항목 등 회계감사기준 개정내용 준수 여부 점검

❶ 감사의견, 감사시간, 감사·비감사용역 보수 등 외부감사제도 운영 현황 관련 공시내용 기재 여부 점검

❷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운영·감사보고서 공시 여부 확인

❸ 상장사(자산 1천억 이상) 핵심감사항목 공시 여부 점검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3개 항목)

◦(선정사유)기업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등 재무정보는 투자의사결정 등에 활용되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정보임

◦(점검내용)대손충당금 설정현황 공시·재고자산 현황 공시*, 新K-IFRS 기준서 도입 관련 공시** 등

* 비상장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및 코넥스 상장기업에 한해 점검

** '19.1.1.에 新리스기준을 최초로 적용함에 따른 회계기준 변경 관련 정보 등

기타(2개 항목)

◦ (선정사유)연중 상시감사 유도를 위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 논의내용을 공시하도록 규정(공시서식 §5-2-1, '20.1월 개정)

- 지정대상 증가로 감사인 교체가 빈번해지면서 전기오류수정을 둘러싼 갈등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관련 지침* 준수 점검 필요

* 전기오류수정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 2017-1 및 2019년 개정내용

◦ (점검내용)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의 협의사항 공시, 비교재무제표 수정 관련*

* ① 전기 감사인 입장 기재여부, ② 당기감사인 감사절차 수행여부 등

2. 비재무사항 (7개 항목)

감사위원회 회계·재무전문가 관련(공시서식 §7-2-1, '20.1월 개정)

◦ (선정사유) 감사위원회 내 회계·재무 전문가 선임 여부 및 관련 경력에 대한 정보는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

◦ (점검내용) 감사위원의 회계·재무 전문가 여부 및 유형 기재 등 최근 개정된 공시서식 준수 여부 점검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공시서식 §11-3-4, '19.12월 개정)

◦ (선정사유) 직접금융 자금[주식, 주식연계채권(CB.BW.EB), 회사채 발행자금]의 사용처는 투자자의 중요한 관심사항

◦ (점검내용) 자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개정 서식 준수 여부 및 공모자금의 최초 사용계획과 실제 사용내역 차이 발생 시 변경사유 기재 여부 점검*

* 증권신고서 및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와 비교

최대주주의 개요(공시서식 §8-1-1)

◦ (선정사유) 회사의 경영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대주주의 실체에 관한 사항은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

◦ (점검내용) 최대주주의 기본정보, 최대주주가 법인·단체인 경우 서식을 준수하여 재무정보 및 사업현황 등을 기재하는지 점검

임원의 현황(공시서식 §9-1-1, §7-1-4, §7-2-1)

◦ (선정사유) 임원의 주요 경력, 겸직, 연임여부 등은 업무수행에 신의 성실의무를 다할 것인지 투자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점검내용) 임원현황 기재의 공시서식 준수, 최근 5년간 경력(과거 부실기업 근무 경력 포함), 이사·감사의 연임여부 및 횟수 기재 여부 점검

개인별 보수 공시(공시서식 §9-2-1)

◦ (선정사유) 임원의 보수 등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 및 사회적 책임과 관련 있는 항목으로 주주·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

◦ (점검대상) 임원의 보수지급기준 기재, 개인별 보수 5억원 이상인 경우 지급금액,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의 기재 충실성, 보수 종류별 구분 적정성 등 점검

특례상장기업 공시(공시서식 §3-1-1, §11-3-15)

◦ (선정사유) 기술성장·이익미실현 등 특례상장기업 해당 여부, IPO 증권신고서상 영업실적 예측치와 상장 후 실적을 비교하여 투자자에게 충실히 제공할 필요

◦ (점검내용) 특례상장 현황 및 적용 법규, 상장 전후 최근 2개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사항 예측치와 실적 비교기재 여부 등

제약·바이오 공시 모범사례*(공시서식 §4-2-10~11)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업무자료 → 공시·회계 → 공시유의사항('19.9.10.)

◦ (선정사유)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으나, 정기보고서 상 경영상의 주요 계약, 연구개발 상세내역 등 세부내역 기재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

◦ (점검내용) 경영상의 주요계약, 연구개발 활동 개요, 핵심인력현황 및 연구개발비용 등 모범사례 반영 여부 점검

※ 사업보고서 중점점검은 기재내용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재가 관련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임을 유의

<제출법인 유의사항>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개정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재차 꼼꼼하게 살펴본 이후에 사업보고서를 작성·제출

□ 이번에 선정된 중점 점검항목이 아니더라도 중요사항의 기재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

향후 추진계획

IV. 향후 추진계획

□(점검결과 처리) 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은 '20.5월 중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하여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 동일 항목을 반복적으로 부실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고 제재 가능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며, 필요시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

□(모범사례 발표) 점검 결과 기재내용이 충실한 경우 모범사례로 선정하여 공시설명회 등을 통해 전파할 예정입니다.

☞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은 투자자 보호 강화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은 사업보고서 작성 지원 및 부실기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붙임자료 **[붙임]**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항목 (21개 항목)

Ⅰ. 재무공시사항(14개 항목)

□ 외부감사제도 관련 공시내역의 적정성(9개 항목)

순번	항목명
1	감사보수 기재 여부
2	사업보고서상 감사시간 기재 여부
3	감사인명 기재 여부
4	감사의견 기재 여부
5	비감사용역보수 정보수집
6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제출 여부
7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제출 여부
8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 제출 여부
9	상장사(자산 1 천억원 이상) 감사보고서상 핵심감사항목 기재 여부

□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3개 항목)

순번	항목명
1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공시 여부
2	재고자산 현황 공시 여부
3	'주석'에 新 K-IFRS 기준서(제 1116 호 리스)의 변동영향·변동내용 기재여부

□기타(2개 항목)

순번	항목명
1	비교재무제표 수정 관련
2	내부감시기구와의 협의사항 공시

Ⅱ. 비재무공시사항(7개 항목)

순번	**항목명**(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관련 조문)
1	감사위원회 회계·재무전문가 관련(공시서식 §7-2-1, '20.1 월 개정)
2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공시서식 §11-3-4, '19.12 월 개정)
3	최대주주의 개요(공시서식 §8-1-1)
4	임원의 현황(공시서식 §9-1-1, §7-1-4, §7-2-1)
5	개인별 보수 공시(공시서식 §9-2-1)
6	특례상장기업 공시(공시서식 §3-1-1, §11-3-15)
7	제약·바이오 공시 모범사례(공시서식 §4-2-10, 11)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30

세무 및 법률정보 등

코로나19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세법개정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및 후속 시행령 개정 추진

□ '20.3.17.(화) 국회 재정위원회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9의11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감염병 발생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감면** ○ **(대상)** 감염병 집단 발생으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전문직 서비스업, 사행성 서비스업** 및 **금융 및 보험업** 등은 제외* * 구체적 업종의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 **(감면내용) '20.6.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에 대해 **소기업 60%, 중기업 30% 감면*** * (참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소기업) 10~30% (중기업) 5~15% ○ **(감면한도) 2억원*** * (참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한도: 1억원 ○ **(최저한세 등)** 최저한세 **적용 배제** - **다른 세액감면.공제제도***와는 **중복적용 불가**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과 중복적용 불가, 다만, 고용증대세제와는 중복적용 가능 - **무신고자** 등은 세액감면 **적용 제외**

<개정이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
<적용시기> '20.6.30.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

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2배 한시 확대(조특법 §126의2②)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15~40%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기명식선불
카드 등 : 3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 40%

○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00~300만원

○ (추가 공제한도) 아래 항목별로 각 100
만원한도 추가

<table><tr><th>항 목</th><th>한도 추가</th></tr><tr><td>전통시장</td><td>100만원</td></tr><tr><td>대중교통</td><td>100만원</td></tr><tr><td>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td><td>100만원</td></tr></table>
○ (적용기한) '22.12.31.</td><td>□ '20년 3~6월 사용분 공제 확대

○ (좌 동)

○ '20년 3~6월 사용분에 대해
공제율을 2배 확대

- 신용카드 : 30%

-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기명식선불
카드 등 : 6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6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 80%

※ '20년 1,2,7~12월 사용분은
종전 공제율과 동일

○ (좌 동)</td></tr>
</table>

<개정이유>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간소비 유도

<적용시기>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3. 기업 접대비 한도 한시 확대(조특법 §136④·⑤)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 접대비 손금 산입한도

○ 기본한도

- 일반기업 1,200만원

- 중소기업 3,600만원

○ 수입금액별 추가한도</td><td>□ 손금 산입한도 한시적 상향

○ (좌 동)

○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상향
('20년 한시적 적용)</td></tr>
<tr><td>
<table>
<tr><th>수입금액 구간</th><th>한 도</th></tr>
<tr><td>100 억원 이하</td><td><u>0.3 퍼센트</u></td></tr>
<tr><td>100 억원 초과 500 억원 이하</td><td><u>3 천만원</u>+(100 억원 초과분의 <u>0.2 퍼센트</u>)</td></tr>
<tr><td>500 억원 초과</td><td><u>1 억 1 천만원</u>+(500 억원 초과분의 <u>0.03 퍼센트</u>)</td></tr>
</table>
</td><td>
<table>
<tr><th>수입금액 구간</th><th>한 도</th></tr>
<tr><td>100 억원 이하</td><td><u>0.35 퍼센트</u></td></tr>
<tr><td>100 억원 초과 500 억원 이하</td><td><u>3 천 5 백만원</u>+(100 억원 초과분의 <u>0.25 퍼센트</u>)</td></tr>
<tr><td>500 억원 초과</td><td><u>1 억 3 천 5 백만원</u>+(500 억원 초과분의 <u>0.06 퍼센트</u>)</td></tr>
</table>
</td></tr>
</table>

<개정이유> 기업지출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등 매출 확대 선순환 유도
<적용시기>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범위 확대(조특법 §104의24)

현 행	개 정 안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소득세·법인세·관세 **세액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복귀	□ **감면 대상 확대**
○ **적용대상** -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유지하고 **국내에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시 **세액감면 적용** ※ 단,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외사업장 생산량 50% 이상 감축	○ **적용대상 확대** - 해외사업장을 폐쇄 또는 축소(생산량 50%이상 감축)하고 **국내의 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도 포함 * **구분경리**를 통해 "기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증설된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하는 경우에 한함
○ **세액감면** -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 2년간 50% *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 시 3년간 100% - **관세** 100%(부분복귀 시 50%)	○ (좌 동) - 기존 사업장 증설의 경우, **해외사업장의 축소 수준**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의 한도** 설정 * 감면대상 소득의 한도(시행령 개정사항) 증설된 부분의 발생 소득 × (해외사업장의 매출액 감소액 / 증설된 부분의 매출액)(최대 1)
○ **사후관리*** **요건** *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국내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 폐지, 법인해산 한 경우 - 사업장을 국내이전·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 **사후관리 요건 보완** - 사업장 증설의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의 폐쇄도 포함 ○ (좌 동)
○ (적용기한) **'21.12.31.**	

<개정이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 유도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국내에서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

최신 세무예규 판례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2014.1.1. 개정된 조특법 제18조의2 제2항 시행 이전까지는 기간제한 없이 국내 발생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므로 위 규정 시행 이전에 국내에서 근무하다가 경력 단절이 발생된 자들로서 부칙 제59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2014.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 적용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부합함 (조심2019서3540, 2020.02.26)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4년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개정세법 해설'에 의하면 쟁점개정규정의 개정취지 등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조특법 제18조의2 제2항에서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OOO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가 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면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4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OOO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라고 개정되었고, 쟁점부칙규정에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OOO에 대해서는 제18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의 경과조치를 두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개정규정의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의미를 최초 근무 시점에 관계 없이 OOO가 처음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나) 쟁점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14.1.1.이므로 쟁점개정규정 중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법문상 최초 근무일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2014.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쟁점개정규정의 개정취지는 전체적인 OOO의 과세특례 적용을 축소하면서 내국인 근로자와 OOO 간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같은 기간 국내에서 근무를 제공한 OOO로서 쟁점OOO와 같이 경력 단절이 발생된 경우 국내에서 최초 근무한 날이 쟁점개정규정 시행일에 가까울수록 단일세율 적용에 있어서 특례적용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등 개정취지와는 달리 OOO 간의 과세형평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반면, 2014.1.1. 쟁점개정규정 시행 이전까지는 OOO에 대해 기간제한 없이 국내에서 발생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므로 쟁점OOO와 같이 쟁점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국내에서 근무하다가 경력 단절이 발생된 자들로서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2014.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 적용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OOO 간의 과세형평에 부합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OOO의 경우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 근로자의 2016·2017년 귀속분 근로소득(원천)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사업자가 발전설비 사업을 양도하며 양수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 사업의 양도일 전에 종업원 중 일부를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모든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38, 2020.02.21)

(사실관계)

o 신청법인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서 여러 개의 사업장에서 무역업, 제조업, 산업 및 조직공학 관련 서비스업, 발전설비의 수입 및 판매업, 설계 또는 시운전을 포함하는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o 신청법인은 사업부문 개편에 따라 신청법인 사업 중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 양도할 예정인바

- 종된 사업장 중 한 곳인 PP시 P구 소재 AAA(주)에너지사업부(이하 "본건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발전설비 사업(이하 "본건사업")을 BBB(유)(이하 "양수인")에 0000.3.1. 이전하기로 함.

o 이에 따라 신청법인은 0000.3.1. 본건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 의무(물적·인적시설 포함)를 양수인에게 승계하게 되는데

- 다만, 본건사업 양도일 이후 양수인이 전기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절차상 현재 진행 중인 공사등에 공백이 발생하므로 양수인이 2월 중 미리 등록을 신청하여 전기공사업을 등록할 예정인바
- 양수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 신청 당시 3명의 전기공사기술자가 필요하여 승계대상 종업원 229명 중 3명의 기술자는 사업 양도일 전인 2.1. 양수인에게 우선적으로 이전됨(신청법인 퇴사 후 양수인 입사).

(질의요지)

o 2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하나의 종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사업부문의 모든 권리, 의무를 양도함에 있어 양수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 종업원 중 일부를 양수인에게 미리 이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회신)

2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양도인")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영위하던 발전설비 사업을 다른 사업자(이하 "양수인")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양수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하여 사업의 양도일 전에 양도인의 종업원 중 일부를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모든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Tax Tips: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 국세청의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안내

○ 국세청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에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착수 유예(연기·중지 포함)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세정지원 대상 기준?

지원 대상 업종	①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 등(소비성유흥업 등 제외)을 영위하는 납세자
직권 유예	① 확진환자·격리중인자(업종 무관) ② 특별재난지역 (대구, 경산, 청도, 봉화) 소재 본점 법인 ③ 확진 환자 발생·방문지역 및 우한 귀국 교민 수용지역* 납세자 *경찰인재개발원(아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진천) 인근 상권지역
개별 신청	① 중국교역 중소기업(수출기업, 부품·원자재 수입기업) ② 중국 현지 지사·공장 운영, 기타 현지 생산중단으로 차질이 발생한 국내 생산업체 등 지원이 필요한 납세자

□ 세정지원 내용?

납기연장	법인세(3월 확정신고), 부가가치세(4월 예정신고)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상황이 지속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 연장 가능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기 고지서 발급 국세는 그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징수유예)하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 최장 2년 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중국 수출 중소기업 등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정지급기한인 2/27보다 10일 앞당긴 2/17까지 지급
세무조사 유예	바이러스로인한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 세무조사가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은 제외) 납세자에게 해명 안내가 필요하거나 고지가 예상되는 과세자료 처리를 보류.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은 제외)

업 무 소 개

▪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 ▪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 ▪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 ▪ 조직, 인사 전략 / HR ▪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	▪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 ▪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 ▪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 ▪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 ▪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 ▪ PI / CRM / Risk Management 등

문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 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kr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LLC is a member of Crowe Global, a Swiss verein. Each member firm of Crowe Glob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Glob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Crowe Global member.